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6조 (기능) ① - ② (생략) ③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 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하되,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.</p> <p>② - ⑦ (생략)</p>	<p>제16조 (기능) ① -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부터..... </p> <p>제17조 (구성 등) ①,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<u>당연직 고문으로 하고,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</u> 이와는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.</p> <p>② - ⑦ (개정안과 같음)</p>

※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